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방미숙 의원

발의일 : 2021. 5.

1.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독립유공자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1949년부터 시작된 정부포상 결정문인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독립유공자 공훈록」의 내용 중에서 당시 하남시 지역의 3·1 운동가 김교영, 김홍렬, 구희서, 이대헌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 하남지역 3·1 운동의 최초 거사일인 "3월 27일"을 독립유공자의 날로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